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
2023. 6. 22(목) 10:00

제244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행정안전국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본 승인안은 2023년 5월 31일 의안번호 제2324호로 금천구청장 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31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예비비 지출내역

1) 801-0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단위 : 천원)

부서명	예산과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잔액	지출사유
	단위	세부	통계목					
합 계				3,123,200	1,136,550	0	1,986,650	
행정지원과	고객수요에 부응하는 행정지원 체계 유지	코로나19 예방지원	의료 및 구료비	79,200	79,200		0	오미크론의 폭발적 확산 및 새로운 진단검사 체계 시행, 키트 수급 불안정 등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취약계층 보호 위한 긴급 예비비 지출
교육지원과	즐거움 배움과 돌봄이 있는 학교 만들기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교육환경조성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17,000	15,000		2,000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임시회의 결과('21.1.21) 자치구 재난지원 사업 실시 결의에 따라 자원 마련
	온종일 돌봄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27,000	27,000		0	
주민안전과	재난안전관리	재난방재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3,000,000	1,015,350		1,984,650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 안정 및 수습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

○ 2022회계연도 행정안전국 재해·재난목적예비지 지출액은 11억 3,655만원이며 지출잔액은 19억 8,665만원임.

3. 검토의견

-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우에 지출”하는 것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대체적으로 재난에 따른 불가피한 지출이며, 법령에 근거하여 타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예비비 지출의 경우 정확한 편성의 결여로 불용된 경우도 있으며 향후 예비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하고 집행 시에는 이월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 해야 할 것임.

붙임 관련 법령 1부. 끝.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5. 28., 2021. 1. 12.>

[전문개정 2011. 8. 4.]